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0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민형배 · 김우영 · 이성운
정준호 · 김용민 · 조계원
소병훈 · 최혁진 · 안도걸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자전거도로 유형>

① 자전거 전용차로	② 자전거 전용도로	③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차도상 차선으로만 구분된 도로	분리대, 연석 등으로 분리된 도로	분리형	비분리형	차도와 구분없는 차량·자전거 공유도로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구분 도로	보행자/자전거 통행로 미구분 도로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중 “및 제5항”을 “및 제5항·제6항(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을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 13.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

[illegible]

2. ~ 13.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제1항 · 제3항 · 제

